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무행정 담당 인력 1명(6급 1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인력 1명(7급 1명), 여행업 육성·지원 인력 1명(6급 1명), 체육인 복지 및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산업혁신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품 자료 관리 담당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5명(5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6급 1명), 대한민국의사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 및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내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 평가 계획 및 시행

제35조제5항제7호 중 “수립·조정 및 평가”를 “수립·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코시스센터(외신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해외언론 대상 한국 관련 정보 제공

제47조제1항 중 “별표 2의 정원 중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을 “별표 2의 정원 중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을 “8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82”를 “6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4”를 “675”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6”을 “179”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을 “91”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6”을 “35”로 하고, 행정서기보 “11”을 “1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91”을 “692”로 하고, 일반직 계 “683”을 “684”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0”을 “18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을 “82”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6”을 “35”로 하고, 행정서기보 “11”을 “1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2 중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93”을 “588”로 하고, 일반직 계 “592”를 “587”로 하며, 전산주사보 “7”을 “6”으로 하고, 공업서기 “17”을 “1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30”을 “29”로 하고, 방호서기보 “122”를 “121”로 하며, 학예연구사

“155”를 “15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93”을 “588”로 하고, 일반직 계 “592”를 “587”로 하며, 전산주사보 “7”을 “6”으로 하고, 공업서기 “17”을 “1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30”을 “29”로 하고, 방호서기보 “122”를 “121”로 하며, 학예연구사 “152”를 “15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4”를 각각 “309”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을 “2”로 하며, 사서주사보 “59”를 “58”로 하고, 방호서기보 “9”를 “8”로 하며, 학예연구사 “11”을 “10”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4”를 각각 “309”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을 “2”로 하며, 사서주사보 “55”를 “54”로 하고, 방호서기보 “9”를 “8”로 하며, 학예연구사 “11”을 “10”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3”을 각각 “162”로 하고, 방송무대서기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3”을 각각 “162”로 하고, 방송무대서기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97”을 각각 “96”으로 하고, “사서주사 1”를 삭제한다.

별표 8의2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52”를 각각 “51”로 하고, 학예연구관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41”을 각각 “43”으로 하고, 학예연구관 “4”를 “5”로 하며, 학예연구사 “15”를 “16”으로 한다.

별표 8의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을 각각 “21”로 하고,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다음에 “시설주사 1”를 신설한다.

별표 9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96”을 각각 “9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5”를 “9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9”를 각각 “15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56”을 “155”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2”를 각각 “12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20”을 “1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000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7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

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 ② (생 략)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u><신 설></u> 15. (생 략) ④ 삭 제 ⑤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에 관한 지원계획의 <u>수립 · 조</u> <u>정 및 평가</u> 8. ~ 11. (생 략) ⑥ (생 략) ⑦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u>6. 외신지원센터의 운영</u> 7. (생 략) <u><신 설></u>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4. (현행과 같음) <u>1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u> <u>성과 평가 계획 및 시행</u> <u>16. (현행 제15호와 같음)</u> ⑤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수립 · 조</u> <u>정</u> 8. ~ 11.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5. (현행과 같음) <u>6. 코시스센터(외신지원센터)의</u> <u>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7. (현행과 같음) <u>8. 해외언론 대상 한국 관련 정</u>

⑧ (생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u>별표 2의 정원 중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② ~ ⑫ (생략)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 4와 같으며, <u>별표 8의 4의 정원 중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u> ⑭ ~ ⑲ (생략)	<u>보 제공</u>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u>별표 2의 정원 중 인권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u>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 ----- -----<u>8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u> -----. ⑭ ~ ⑲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82	683	+1
일반직 계	674	675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6	179	+3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0	91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6	35	-1
행정서기보	11	10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	•	•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91	692	+1
일반직 계	683	684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0	183	+3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	82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6	35	-1
행정서기보	11	10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1</u>	<u>2</u>	+1
•	•	•	
•	•	•	
행정주사보	<u>11</u>	<u>10</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93	588	-5
일반직 계	592	587	-5
전산주사보	7	6	-1
공업서기	17	16	-1
행정서기보	30	29	-1
방호서기보	122	121	-1
학예연구사	155	154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93	588	-5
일반직 계	592	587	-5
전산주사보	7	6	-1
공업서기	17	16	-1
행정서기보	30	29	-1
방호서기보	122	121	-1
학예연구사	152	151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14	309	-5
일반직 계	314	309	-5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2	-1
사서주사보	59	58	-1
방호서기보	9	8	-1
학예연구사	11	10	-1
전기운영서기보	1	<삭 제>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14	309	-5
일반직 계	314	309	-5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2	-1
사서주사보	55	54	-1
방호서기보	9	8	-1
학예연구사	11	10	-1
전기운영서기보	1	<삭 제>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63</u>	• <u>162</u>	-1
일반직 계	<u>163</u>	<u>162</u>	-1
•	•	•	
•	•	•	
방송무대서기	<u>17</u>	<u>16</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63</u>		<u>162</u>	-1	
일반직	계		<u>163</u>		<u>162</u>	-1	
	.		.		.		
	.		.		.		
방송무대서기			<u>17</u>		<u>16</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7	96	-1
일반직 계	97	96	-1
·	·	·	
·	·	·	
<u>사서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2	51	-1
일반직 계	52	51	-1
학예연구관	11	10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1	43	+2
일반직 계	41	43	+2
·	·	·	
·	·	·	
학예연구관	4	5	+1
학예연구사	15	16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0</u>		<u>21</u>		+1
일반직 계			<u>20</u>		<u>21</u>		+1
	.		.		.		
	.		.		.		
<u>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6	95	-1
일반직 계	96	95	-1
3급 또는 4급 이하	95	94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9</u>	• <u>158</u>	-1
일반직 계	<u>159</u>	<u>158</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6</u>	<u>155</u>	-1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22</u>		<u>121</u>	-1	
일반직	계		<u>122</u>		<u>121</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0</u>		<u>119</u>	-1	